



의안번호	제126호
------	-------

<p>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20. 10. 13.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26호
----------	-------

제출연월일 : 2020. 10. 13.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일부가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 내용(재난관리기금 용도 제외사항) 반영(안 제3조)
- 나. 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의 관리와 운용 등 추가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규제대상 아님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9. 8.~ 9. 28.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6) 충청남도 소관 실과: 자연재난과 (041-635-3255)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제1호바목1)중 “풍수해 저감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4. 시장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를 “제3조제1호바목에 따라”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0조”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으로 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중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기금의 관리와 운용
-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6. 민간분야 기금 지원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제12호” 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안전총괄과장	강 선 환
	안전관리팀장	강 대 영
	담 당 자	심 석 보 (746-6422)

<신 설>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②~③(생략)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생략)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⑤(생략)

<신 설>

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3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제3조제1호마목에 따라-----

-----.

②~③(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⑤(현행과 같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p>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3.(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u></p> <p>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③(생략)</p>	<p>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p> <p>1.~3.(현행과 같음) <u>4. 기금의 관리와 운용,</u> <u>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u> <u>6. 민간분야 기금 지원</u> <u>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u></p> <p>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 ----- -----.</p> <p>②~③(현행과 같음)</p>
---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나. 추계결과

3. 작성자

안전총괄과장 강 선 환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25호, 시행 2020.4.8.]**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 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20.1.7.]

참고2**관련 공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알림(필수조례)**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10631(2020. 7. 23.)호 관련, 2021(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과제(필수조례)